

의안번호	제 99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수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8년 11월 21일

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수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9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11월 21일

발의자 : 이수완, 윤남진, 김기창,
박병진, 연종석, 오영탁,
하유정

1. 제안이유

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었던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「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조례」

나.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,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 부터 제7조까지)

3. 조례안 : 불입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불입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균형건설국 혁신도시발전추진단과 협의

라. 입법예고 : '18. 10. 23. ~ '18. 10. 29.(의회홈페이지)

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”를 “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”를 “조례는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”로, “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”를 “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·관리하기 위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하고, 제4조,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2조,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.

제2조(중전의 제4조) 본문 중 “하되”를 “하며, 한 차례에 한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공무원”을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, 이전공공기관의 장, 산·학·연 클러스터 입주기관·대학·연구소·경제단체의 장 및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4조(중전의 제5조)제1항 중 “대표하고”를 “대표하고,”로,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이 모두”를 “위원장 모두가”로, “수행하지 못하는”을 “수행할 수 없을”로 한다.

제5조(중전의 제6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회의)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하고, 제8조를 제7조로 하며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중전의 제8조)제2항 중 “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(과)장이”를 “혁신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하고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11조) 중 “위원에게는”을 “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”으로, “등 필요한 경비를”을 “등을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</u> <u>설치·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</u>는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<u>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</u>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<u>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</u> 2. <u>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·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</u> 3. <u>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</u> 4. <u>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·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</u> 	<p><u>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 <u>조례</u>는 「<u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31조 ----- ----- - <u>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·관리하기 위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에</u>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

사항

5.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

6. 기타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국토교통부, 충청북도 및 진천군·음성군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

2.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그 밖의 혁신도시 관련기관·경제단체 등에 속한 자

3.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

4. 도시계획 및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위원장

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4조(임기)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6조(회의) ① 도지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회의

제2조(임기) -----
----- 하며, 한 차례에 한하여

----- .

----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, 이전
----- 공공기관의 장, 산·학·연 클
----- 러스터 입주기관·대학·연구
----- 소·경제단체의 장 및 공무원-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
----- 대표하고, -----
----- 총괄한다.

② 위원장 모두가 -----
----- 수행할 수 없을

----- .

제6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회의)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.

를 진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8조(간사 등) ① (생략)

② 간사는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(과)장이, 서기는 같은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.

③ (생략)

제9조(서면심의) 도지사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

<삭 제>

제8조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혁신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-----
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별한 사정이 있거나, 서면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 ①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·단체·전문가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 (생략)

<삭 제>

제9조(수당 등) -----
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---

----- 등을 ---
-----.

제10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관 계 법 령

[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]

제31조(혁신도시발전위원회) 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2 이상의 시·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(이하 "공동혁신도시"라 한다)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7.12.26.>

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4.5.28., 2017.12.26.>

1.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
2. 혁신도시의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·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
3.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
4. 혁신도시 내 대학·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
5.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
6.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
7.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·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17.12.26.>

- ④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·도지사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, 도시·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,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·대학·연구소·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. <개정 2008.2.29., 2011.4.14., 2013.3.23., 2017.12.26.>
- ⑤ 위원장은 시·도지사과 민간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.
- ⑥ 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]

제32조(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
 2. 도시·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
 3.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
 4. 그 밖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·학·연 클러스터 입주기관·대학·연구소·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
-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.

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시·도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.